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5. 8 선고 2016나11597 판결 [보증금 등 이행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5. 8 선고 2016나1159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218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광호엔지니어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17. 3. 30.

판결 선고 2017. 5. 8.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가단218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8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항소취지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업목적과 구성 등

- 1) B은 전남 화순군 L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 및 금속구조물 제조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J은 2002년경 이후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이고, G, H은 B의 사내이사(2014. 2. 28. 및 2014. 2. 1. 각 사임), I은 사외이사(2013. 9. 5. 사임)였다.
- 3) 2004. 12. 6. 이후 B의 발행 주식은 20,000주로, 2013년 11월경 기준 J이 40%, I, G가 각 30%씩 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B의 회생신청과 취하

B은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21. 신용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취하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설립과 구성 등

- 1) 피고는 2014. 2. 4. 전남 화순군 M, 디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 및 금속구조물 제조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위 본점 소재지는 2014. 2. 15. 전남 화순군 N으로 변경되어 2014. 5. 9. 변경등기되었다.
- 2) 피고는 G, H이 1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씩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 G, H, I이 피고의 사내이사였고, 그중 G는 대표이사였다. 그러나 이들은 2014. 2. 14. 모두 사임하였고, 대표이사는 K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8. 3. 다시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3. 18. B를 상대로 B와 2012. 12. 6. 체결한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과 영업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060호). 위 법원은 2014. 6. 5. 'B은 원고에게 171,833,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되, 지체시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B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 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영업 목적, 영업장(본점) 소재지, 임원 등 인적 구성, 거래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B와 J으로부터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과 디자인등록권을 양수받았으며, B와 동일한 기술력으로 동일한 주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별개의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화해권고 결정상의 채무 171,83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 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5348 판결 등). 그리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주장, 증명할 책임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회생신청을 취하한 직후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와 B의 영업 목적이 똑같으며, B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G가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설립 당시 이사 3명이 모두 B의 임원이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4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 설립 이후 피고의 직원이었거나 현재 직원인 C, D, E, I, F은 그 이전에 B의 직원이었던 사실, ② 피고의 거래 매입처 중 일부(원고 주장으로는 60%)가 B의 매입처와 일치하는 사실, ③ B과 J은 그들이 공동권리자로 보유한(다만, 그중 디자인권 1건은 B만 권리자이다) 3개의 특허권과 2개의 디자인권을 2014. 2. 14.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G와 H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회사로 G가 피고의 주주라는 것 외에는 설립 시 B의 관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 설립 이후인 2014. 2. 6. J의 계좌에서 103,944,4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직후 G의 계좌에 103,94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이미 피고가 설립된 이후여서 위 돈이 피고의 설립자금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설립 시 G의 계좌에는 이미 2억 원이 있어서 위 돈이 설립자금으로 납부되었다). 설령, 이를 J이 피고의 설립자금을 사실상 출자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전체 설립 자금의 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1) 그리고 B의 대표이사인 J이 피고의 설립자금을 일부 출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J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B의 소재지와 인접해있다는 것 외에는 B과 어떠한 연관을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의 거래 매입처 중 일부가 B와 일치하나 동종 업종의 회사 사이에 그 거래처가 겹치는 것은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편, 매입처와 달리 2014년 피고의 매출처 중에는 B의 매출처와 일치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④ B의 사내이사였던 사람들이 피고를 설립하였고, B의 일부 직원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나,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가 어려워지면 그 경력을 살려 직접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종의 회사 사이에 이직 등을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⑤ B은 회생신청 당시 등록된 특허권 7건과 디자인권 23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피고에게 양도된 것은 특허권 3건과 디자인권 2건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 30. 위 양도받은 특허권 등을 다시 B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권리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9. 3. B 앞으로 위 각 권리의 이전등록이 마쳐져서 현재 B이 그 권리자이다. 한편, 피고가 위 양수받은 권리를 보유하는 동안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⑥ B의 주요 고정자산은 2010년경 취득한 본점 소재지 공장 부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 및 건물 내외 각종 기계, 기구 등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거나 피고가 설립 이후 이러한 B의 주요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2) ⑦ 피고가 관련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2553)3) 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G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에 종사한 지가 약 15년 이상 되어 B와 유사한 영업활동 범위의 공사를 수주하는데 현재는 실내건축 및 유리공사도 수주하고 있고, B에서 인원 및 고기술 인력이 부족한 현장은 자신이 B와 별도로 계약하여 직접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공사하기도 했다.'는 내용은, 전문경력과 능력에 따라 B와 유사한 영업과 공사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내용만으로 피고가 B와 동일한 기술력으로 B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⑧ 피고가 설립된 것은 원고가 B을 상대로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060호)을 제기하기 이전이어서,4) B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최규연

판사김봉선

1)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2) 위 공장 부지와 건물 등은 B 소유로 있다가 담보권실행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다른 회사가 경락받았다.

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양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2015. 2. 10.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14. 3. 18.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